

4.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19년 2월 28일
- 제출자 : 대구광역시장(소방안전본부장)
- 회부일자 : 2019년 3월 4일
- 상정일자 : 제26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
제2차 기획행정위원회(2019년 3월 21일), 원안 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)

□ 제안이유

-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전문성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안 제4조는 전문의용소방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원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시 전문의용소방대 정원을 조정하였음.
- 안 제19조는 대형재난 발생으로 인한 특별 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해 현실에 맞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.

3. 검토보고 요지 (보고자 : 전문위원 박영구)

○ 조례안 개정의 목적은

- ▶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사항 반영 및 대구시 의용소방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문의용소방대의 정원을 확대하고, 재난대응 활동의 적극적 참여에 대한 현실적 소집수당 지급근거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

- ▶ 안 제4조제3호에서는 ‘20명 이내’의 전문의용소방대 정원을 법률 시행규칙 개정 반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‘30명 이내’로 확대·조정하였음.

- ▶ **안 제19조제3호**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의용소방대원³⁾과 의용소방대에 대한 1일 8시간의 소집수당 지급한도 예외(초과)규정을 명시하였음.
 - 이는 전담의용소방대원과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의용소방대원의 재난대응 활동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.
- ▶ 이번 개정안 제출은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개정으로 전문의용소방대 정원이 '50명 이내'로 확대(2017. 8. 29. 개정)되고, 전담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소집수당 지급한도 예외규정(2018. 5. 8. 개정)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서,

정원을 확대하여 전문의용소방대의 운영 활성화 및 소방력 강화를 도모하고, 재난대응 활동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.
- ▶ 다만, 의용소방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조례 개정 등 제도적 정비와 함께 소방전문교육과정 제공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3) 정규 소방인력이 미배치된 지역(주로 농·어촌)에 소방력(소방차량, 장비 등)을 갖춘 민간중심의 인력을 활용하여 민간자율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만든 조직(대구시 해당 없음)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	답 변
<p>○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소집수당 지급 외의 다른 사기진작 방안은?</p> <p>○ 의용소방대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참신한 대원 모집 방안은?</p>	<p>○ 자녀장학금 지급, 포상, 해외선진지 견학 등 다양한 사기진작 방안을 시행하고 있음.</p> <p>○ 의용소방대의 자질 향상과 전문화를 위해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다양한 대원 모집 방안을 검토하겠음.</p>

5. 토론요지

- 없음

6. 수정안 요지

- 없음

7. 심사결과

- 원안 가결(재석의원 전원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